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법 제 업 무 운 영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세균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연관 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2 신설)

법령의 조문이나 내용상 연관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관 법령 개정 시 기관 간 협조 절차를 개선·보완함.

나. 비공개 훈령·예규 등의 법제정보시스템 등재(안 제24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항 신설 및 제25조의2제4항 신설)

비공개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을 제외한 비공개 훈령·예규 등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비공개 훈령·예규 등의 공개가 행정의 투명성 및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민원인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석 근거 마련(안 제27조의3제4항)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외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입안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29조제1항)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입안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안지원 대상을 법령안에서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까지로 확대함.

마. 자치입법 지원 강화(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6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되는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는 경우 법제처에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법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6. ~ 6.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연관 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유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소관 법령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해당 법령안의 조문·용어·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연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방법과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연관 법령 개정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안한 법령안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다른 협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연관 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경우 법령안의 입안, 입법예고, 관계 기관 협의, 제11조 제6항에 따른 평가·협의, 규제심사, 법령안 심사 등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중전의 제11조의2)제2항 본문 중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지체 없이[국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점(始點)을 달리할 수 있다]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관계 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회신한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그 의견 및 검토결과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중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이견 여부를 파악하여”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파악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제11조의3”을 “제11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1조의3제1항”을 “제11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를 “법제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훈령·예규등이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3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훈령·예규등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훈령·예규등을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비밀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훈령·예규등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등재된”을 “제2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재되거나 제출받은”으로,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제2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제처장은 비공개 훈령·예규 등의 공개가 행정의 투명성 및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
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의3제4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
을 “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전 법령해석의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9조제1항 중 “법령안의”를 “법령안,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이하 이 항에서 “법령안등”이라 한다)의”로,
“법령안에”를 “법령안등에”로 한다.

제29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를 지방자
치단체가 제때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
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제처장에게 해당 지침에 대한 자문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법령의 입법취지 등
을 고려하여 자문 등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 ⑥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정비지원, 제4항 및 제5
항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심사·해석”을 “입안·심사·해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 이후 발의되는 의원발의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공개사유가 있는 훈령·예규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령된 훈령·예규등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훈령·예규등을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3개월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훈령·예규등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훈령·예규등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조의2(연관 법령 입법과정에서 의 기관 간 협조)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내용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소관 법령 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관하 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u> <u>1.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 · 유사한 사항을 개정하 는 내용으로서 입법정책의 통 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을 확 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소 관 법령과 함께 개정할 필요 가 있는 사항</u> <u>2. 그 밖에 해당 법령안의 조문 · 용어 · 내용 변경 등으로 인 하여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u> <u>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관 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연관 법령을 함께 개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방법과 추진일정 등을 포함</u>

	<u>한 연관 법령 개정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u> <u>③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안한 법령안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 <u>④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연관 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경우 법령안의 입안, 입법예고, 관계 기관 협의, 제11조제6항에 따른 평가·협의, 규제심사, 법령안 심사 등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u>
<u>제11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u>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조직·규제 등과 관련	<u>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회 심의 일정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신설>

④ · ⑤ (생략)

제11조의3 (생략)

--- 지체 없이[국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점(始點)을 달리할 수 있다]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관계 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회신한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그 의견 및 검토결과를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11조의4 (현행 제11조의3과 같음)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① ~ ③ (생략)

④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이견 여부를 파악하여 해당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제11조의3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 이견의 해소와 제12조에 따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략)

⑤ 협회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
이 있는 경우

2. (생략)

⑥ (생략)

제15조(예고방법) ① 법령안 주관

제12조(법률안 국회 심의과정의
협조 등)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의 의견
을 파악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에는 -----
--.

제12조의2(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① 제11조의4--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1. 제11조의4제1항-----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예고방법) ① -----

기관의 장은 관보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법제정보시스템(이하 “법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24조의3(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

----- 법제정보시스템-----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확보 및 등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다만, 훈령·예규등이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
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5조의2(훈령·예규등의 사후
심사·검토) ① 법제처장은 제24
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등재된
훈령·예규등을 수시로 심사·
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
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
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훈령·예규등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훈령·예
규등을 「보안업무규정」 제21
조에 따른 비밀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④ 법제처장은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훈령·예규등이 외부로 공개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훈령·예규등의 사후
심사·검토) ① ----- 제24
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
재되거나 제출받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신 설>

제27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안
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
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소속 직원을 위원회에 출
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
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

1.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법제처장은 비공개 훈령·예
규등의 공개가 행정의 투명성
및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는 그 의견을 소관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관
계인-----
-----.

⑤ -----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 3. (생략)

<신설>

⑥·⑦ (생략)

제29조(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법령안의 입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려는 법령안에 대하여 입안지원을 하거나 법적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① ~

③ (생략)

<신설>

-----.

-----.

1. ~ 3. (현행과 같음)

4. 종전 법령해석의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①

----- 법령안,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이하 이 항에서 “법령안등”이라 한다)의 -----
----- 법령안등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자치법규 입

④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
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
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
활용 등) ① 법제처장은 정부에
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
으로 처리 또는 제공할 수 있도
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시
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제처장에게 해
당 지침에 대한 자문 등 법제지
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법령의 입법취지 등
을 고려하여 자문 등 법제지원
을 해야 한다.

⑤ ----- 제4항

-----.

⑥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정비지원,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
려는 경우 필요하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30조(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
활용 등) ① -----

-----.

1. ~ 4. (생략) 5. 훈령·예규등에 관한 <u>심사·</u> <u>해석</u> 6. ~ 9. (생략) ② ~ ④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 <u>입안·</u> <u>심사·해석</u> 6.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6543